

제22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심사대상 조례안 공고

지방자치법 제66조의 2에 따라 제22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심사대상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9일

순 천 시 의 회 의 장



1. 조례안 목록

- 순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시민안전 청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순천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순천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 조례안
- 순천시 읍·면·동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식품진흥기금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관광홍보달력 제작 및 배부에 관한 조례안
- 순천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 순천시 새마을소득사업 운영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 순천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반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농어촌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 순천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공원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입법예고 기간 : 2018. 7. 9. ~ 7. 13.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년 7월 13일까지 순천시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pjw1028@korea.kr

2) 주소 : 전남 순천시 장명로 30

3) 팩스 : 061-749-4773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 의회사무국(전화 : 061-749-4958)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입법예고 조례안 1부. 끝.

순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허유인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제2768호
----------	--------

○ 발의연월일: 2018. 7. 4.

허유인,이현재,장숙희,정홍준

○ 발 의 자 : 김미연,박종호,최병배,김영진
의원

1. 개정이유

- 공소 제기되어 구금된 지방의원에 대한 의정활동비 지급제한 규정을 신설하여
의정활동비 지급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정하려고 함.

2. 주요내용

- 제7조 (의정활동비 지급제한) - 신설

-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의정활동비 지급제한

3. 개정조례안 : 별 첨

4.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 행정자치부 협조공문 (2016년 행정자치부 선거의회과-2762호)

순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 제8조로 하고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정활동비 지급제한)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7조(의정활동비 지급제한) 의원이</u> <u>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u> <u>경우에는 제2조의 규정에도 불구</u> <u>하고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아니</u> <u>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에 의하여</u> <u>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u> <u>아니한 의정활동비를 소급하여 지</u> <u>급한다.</u>
<u>제7조(준용) (생략)</u>	<u>제8조(준용) (현행 제7조와 같음)</u>

순천시 시민안전 청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2769호
----------	--------

○ 제출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18. 7. 6.

1. 개정이유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같은법 시행령의 조항 이동 및 내용 변경 개정으로 인해 순천시 시민안전 청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조항내용 중 제18조를 제19조로 변경(안 제1조)
 - 재난 안전법의 재난신고 조항이 18조에서 19조로 이동
- 안전청구 대상의 조항내용 중 제32조를 제31조로 변경(안 제3조)
 - 재난안전법 시행령의 특정관리대상지역의 지정 조항이 제32조에서 제31조로 이동
- 위원회 구성 조항내용 중 안전관리실무위원회를 안전정책실무조정 위원회로 변경(안 제8조)
 - 「순천시 안전관리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 조례」 제8조 안전정책 실무조정위원회 규정
- 정밀안전진단 비용부담 조항 삭제(안 제15조)
 - 관련법 근거가 없고 행안부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른 권고사항

3. 개정조례안 : 별첨

4. 관련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순천시 안전관리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 조례」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 해당 없음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18. 4. 11. ~ 2018. 4. 30.) 결과 : 의견 제출자 없음

8. 사전협의(승인) 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18. 3. 30.(여성가족과-13203호)
- 예산부서 심의필 : 해당 없음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18. 4. 4.(전략기획과-5358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18. 4. 9.(순천시 공고 제2018-664호)

순천시 시민안전 청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시민안전 청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18조”를 “제19조”로 한다.

제3조 중 “제32조”를 “제31조”로 한다.

제8조제1항을 제8조로 하고 “①위원회는 「순천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규정에 의한 순천시 안전관리실무위원회”를 “위원회는 「순천시 안전관리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른 순천시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로 한다.

제15조를 삭제하고 제16조 및 제17조를 각각 제15조 및 제16조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기본이념을 달성하고, 각종 재난 등으로부터 순천시민의 안전을 확보하며, 같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안전의식의 생활화를 유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제19조----- ----- -----.
제3조(안전청구 대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난발생의 위험이 높거나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지정된 시설 외의 일반적인 시설물에 대해 주민이 안전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물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안전청구 대상) ----- ----- 제31조 ----- ----- ----- ----- ----- -----.
제8조(구성) ①위원회는 「순천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규정에 의한 순천시 안전관리실무위원회가 대행한다.	제8조(구성) 위원회는 「순천시 안전관리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른 순천시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제15조(비용 부담) 시설물의 안전점검 후 주요구조부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한 경우에 있어서 소요되는 비용은 시설관리 주체 및 소유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삭 제〉
제16조(생략)	제15조(현행 제16조와 같음)
제17조(생략)	제16조(현행 제17조와 같음)

순천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안 번호	제2770호
----------	--------

○ 제출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18. 7. 6.

1. 제정이유

- 순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조례가 순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별도로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용어의 정의 및 재난현장 대응단계(안 제2조 ~ 제3조)
-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및 임무(안 제4조 ~ 제5조)
- 재난현장 상황전파 및 재난지역 주민 대비(안 제9조 ~ 제10조)
- 재난현장 상황파악·통보 및 응급의료활동 지원(안 제15조 ~ 제18조)
- 재난현장 통신망복구 및 복구체계로의 전환(안 제21조 ~ 제22조)

3. 제정조례안 : 별첨

4. 관련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 해당 없음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18. 4. 11. ~ 2018. 4. 30.) 결과 : 의견 제출자 없음

8. 사전협의(승인) 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18. 3. 30.(여성가족과-13203호)
- 예산부서 심의필 : 해당 없음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18. 4. 5.(전략기획과-5398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18. 4. 9.(순천시 공고 제2018-663호)

순천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순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장이 재난현장을 총괄·조정 및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현장 통합대응”이란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현장 대응 업무를 총괄·조정 및 지원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재난현장 대응업무”란 재난관리책임기관이 해당 재난지역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난상황 전파에서부터 긴급복구까지 수행하는 일련의 재난현장 활동을 말한다.
3. “현장지휘관”이란 재난현장에서 실무적으로 재난현장 통합대응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이하 “통합지원본부”라 한다)의 장이 임명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4. “현장책임자”란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이나 직원으로서 재난현장에 출동한 해당기관의 인력 및 장비 등을 지휘·통제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초기대응담당자”란 재난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하여 초동대처 등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재난현장 대응단계) 순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장(이하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재난현장 상황에 맞게 효과적으로 재난현장 대응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와 같이 단계별 재난현장 통합대응을 할 수 있다.

1. 상황전파 : 대책본부장이 재난현장 상황을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전파하는 단계
2. 현장출동 : 대책본부장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출동준비에서부터 재난현장에 도착하기까지의 단계
3. 현장조치 : 대책본부장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재난현장에서 본격적으로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수행하는 단계

4. 긴급복구 : 대책본부장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재난현장에 인력 및 장비 등이 신속하게 투입될 수 있도록 도로 등 기반시설을 임시로 복구하는 단계

제2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현장지휘관 지정

제4조(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① 대책본부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해당되는 재난발생 시, 「순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 등을 통해 재난현장 통합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통합지원본부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대책본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은 재난이 발생할 경우에는 통합지원본부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 사망 3명 이상 또는 부상 20명 이상의 재난. 다만, 교통사고는 제외
2. 집중호우, 태풍, 폭설, 지진, 해일 등 자연재해로 대규모 피해 발생
3. 대규모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서 구조, 구급이 집중적으로 신고되는 경우
4. 국가기반시설, 다중밀집시설, 주요 관공서 및 문화재 등의 화재, 붕괴
5. 해상·주요하천에서의 중대한 유류·유해물질 유출
6. 신종 감염병의 최초 발생 및 법정 감염병의 집단발생
7. 홍수, 댐 붕괴 등 징후 발견 및 피해 발생
8. 그 밖에 사회적 파장이 예상되는 사건사고 및 순천시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재난재해 발생

제5조(통합지원본부 구성 및 임무) ①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부시장이 된다.

② 통합지원본부는 재난현장 통합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재난현장 상황 파악 및 보고
2. 재난현장 상황변화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통합대응체계 구축
3. 재난관리책임기관 간의 공조협력체계 구축
4. 재난관리책임기관 간의 임무조정 및 부여
5. 재난현장 인력·장비 등의 자원 동원, 배분 및 조정

6. 재난현장에서의 언론 대응

7. 그 밖에 정보발령, 피난권고 및 대피명령, 시설복구, 수방, 방역, 구난, 피난처 및 구호품 확보·배포, 위험구역 설정 및 출입제한 등의 조치, 통행 제한 요청 등 재난현장 통합대응에 필요한 사항

③ 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 상황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재난현장에 출동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현장 대응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통합지원본부 내에 종합상황관리반, 현장조치지원반, 긴급복구지원반 등 실무반을 둘 수 있다.

④ 대책본부장은 제3항에 따른 실무반 편성 및 임무에 관한 사항은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따로 정한다.

제6조(업무연락관 파견) 대책본부장은 통합지원본부와 재난관리책임기관 간의 공조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합지원본부에 참여할 업무연락관 파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업무연락관을 파견하여야 한다.

제7조(현장지휘관 지정) ①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재난현장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현장지휘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통합지원본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현장지휘관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난유형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를 따라야 한다.

1. 법 제3조제1호가목에 해당되는 자연재난 : 재난관련 업무담당 국·소장
2. 법 제3조제1호나목에 해당되는 사회재난 : 해당 재난대응 업무를 총괄·수행하는 국·소장

제3장 단계별 재난현장 통합대응

제8조(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계획 통보) ① 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에 통합지원본부를 설치·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라남도 재난안전 대책본부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에 통합지원본부의 위치, 통합지원본부의 장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재난현장을 지휘·통제하기 위하여 현장지휘관을 통합지원본부에 상근하도록 할 수 있다.

제9조(재난현장 상황전파) ①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재난현장 통신망 등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신속하게 재난현장 상황을 전파하여야 한다.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전달받은 재난현장 상황을 법 제34조의5에 근거한 재난유형별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소속기관 등에 신속하게 전파하여야 한다.

제10조(재난지역 주민대피) 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 상황에 따라 주민대피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40조 및 「민방위기본법」 제33조에 따라 재난발생지역 및 재난발생 예상지역을 대상으로 재난방송 및 민방위 경보 발령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재난현장 출동 요청) ① 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에 출동한 재난관리책임기관 이외에 재난현장 대응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재난현장 출동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대책본부장으로부터 출동을 요청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법 제39조에 따라 재난현장 대응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인력 및 장비를 재난현장에 즉시 파견하여야 한다.

제12조(재난현장 상황 정보공유)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재난현장에 출동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해서는 재난현장 통신망을 통해 재난현장 상황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다.

제13조(재난현장 출동지원) ① 대책본부장은 인력 및 장비 등이 재난현장에 신속하고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해당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교통통제 등에 대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요청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난현장에 안전하고 신속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4조(통합지원본부의 위치) ① 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에 출동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안전한 위치에 통합지원본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재난현장에 설치된 통합지원본부의 위치 등을 재난관리책임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재난현장 상황 파악 및 통보) ① 재난현장에 도착한 재난관리책임기관

의 현장책임자는 법 제34조의5에 근거한 재난유형별 위기관리매뉴얼에 따라 재난현장 대응 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통합지원본부의 장에게 수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파악한 재난현장 상황을 법 제18조제1항에서 정한 재난안전상황실에 수시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재난현장 통합대응)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재난현장 상황에 맞게 인력 및 장비 등을 배치하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현장 대응 업무를 효과적으로 총괄·조정 및 지원하여야 한다.

제17조(재난현장 통제) ① 대책본부장은 신속한 인명구조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재난현장 주변지역에 대한 통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재난현장 주변지역 통제를 요청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통제인력 파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8조(응급의료 활동 지원) ①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20조에 따라 재난현장에 설치된 현장응급의료소장은 부상자 응급처치 및 이송 등 응급의료 활동상황을 통합지원본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대책본부장은 현장응급의료소장으로부터 응급의료 인력 및 장비 부족에 따른 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응급의료기관 등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원을 요청받은 응급의료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인력 및 장비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19조(재난현장 기반시설 우선복구)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긴급구조 활동 등에 필요한 인력 및 장비 등이 재난현장에 신속하게 투입될 수 있도록 도로 등 기반시설을 최우선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제20조(긴급복구 인력 및 장비 지원요청) ① 대책본부장은 긴급복구를 위한 인력 및 장비가 부족할 경우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긴급복구 인력 및 장비 지원을 요청받은 재난관리 책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제21조(재난현장 통신망 복구) ① 대책본부장은 기지국 파괴 등으로 인해 재난현장 통신망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경우에는 법 제37조제1항제6호에 따

라 지역통제단장에게 현장지휘통신 긴급복구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요청받은 지역통제단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난현장에 기술인력 파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장 재난현장 복구체계 전환

제22조(복구체계로의 전환) ① 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 대응 업무가 마무리 되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재난관리책임기관과 협의를 통해 복구체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인력 및 장비 등을 재배치하여야 한다.

②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복구체계로 전환에 따른 인력 및 장비 재배치 현황과 재난현장 대응업무 수행 결과 등을 법 제18조제1항에서 정한 재난안전상황실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통합지원본부 철수)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복구활동이 시작되어 통합지원이 필요 없게 된 경우, 통합지원본부를 철수시킬 수 있다.

제24조(권한의 위임) 이 조례에 따른 대책본부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한 권한을 통합지원본부의 장에게 위임한다.

1.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실무반의 편성 및 임무 규정
2. 제6조에 따른 업무연락관 파견 요청
3. 제10조에 따른 재난지역 주민대피
4. 제11조에 따른 재난현장 출동 요청
5. 제13조에 따른 재난현장 출동 지원 요청
6. 제17조에 따른 재난현장 통제 요청
7. 제18조에 따른 응급의료 활동 지원 요청
8. 제20조에 따른 긴급복구 인력 및 장비 지원 요청
9. 제21조에 따른 재난현장 통신망 복구 요청
10. 제22조에 따른 복구체계로의 전환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순천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제2771호
----------	--------

○ 제출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18. 7. 6.

1. 제정이유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2항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택 소방시설의 설치를 지원하고 시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촉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대상인 “화재취약가구”에 대해 정의 : 안 제2조
 - 순천시에 주소를 둔 화재에 취약한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1~3급 장애인, 한부모 가족, 청소년 가장,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 등이 거주하는 가구
- 설치비용 지원 : 안 제4조
 -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방시설의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
- 지원 대상 및 범위 : 안 제5조
 - 설치 지원 대상은 화재취약가구로 하며 범위는 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로 한다.
- 지원신청 : 안 제6조
 -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별지서식의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3. 제정조례안 : 별첨

4. 관련법령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전라남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 기준 조례」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 별첨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 결과(2018. 4. 30 ~ 5. 22.) : 의견 제출자 없음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18. 4. 26.(여성가족과-16602호)
- 예산부서 심의필 : 2018. 4. 24.(안전총괄과-6505호)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18. 4. 27.(전략기획과-4841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18. 4. 30.(순천시 공고 제2018-4841호)

순천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택화재로 인한 순천시민의 인명과 재산피해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화재취약가구”란 화재의 위험에 노출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순천시에 주소를 둔 사람이 거주하는 가구를 말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1~3급 장애인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4. 「청소년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가장
5.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
6. 그 밖에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화재취약가구의 주택화재 예방을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등 시민의 화재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의식을 촉진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설치비용 지원) 시장은 화재취약가구의 화재사고 예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방시설의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 및 범위) ① 소방시설 설치 지원대상은 제2조에 따른 화재취약가구로 한다.

② 소방시설 설치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소화기
2. 단독경보형 감지기
3. 그 밖에 시장이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설치기준은 「전라남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 기준 조례」 제4조에 따른다.

제6조(지원신청) 제5조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별지 1호 서식에 따른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긴급하게 요구되는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1호 서식]

소방시설 지원 신청서						
지 원 대 상 자	성 명		생년월일 (남,여)		세대원 수	
	주 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대상자 구 분	☐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장애인		☐ 한부모가족 ☐ 청소년 가장 ☐ 65세 이상 독거 노인 ☐ 기 타		담당공무원 확 인 란
지원 시설명		소화기_____개 / 단독경보형감지기_____개				
지원희망시기		년 월 일				
「순천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기준 조례」 제 6조에 따라 위 와 같이 소방시설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순천시장 귀하						

순천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 안 제4조(설치비용 지원) : 시장은 화재취약가구의 화재사고 예방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소방시설의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2. 비용추계의 전제

- 화재취약가구의 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 지원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연도별 구분	합 계	1차년도 (2019년)	2차년도 (2020년)	3차년도 (2022년)	4차년도 (2022년)	5차년도 (2023년)
총 비용(a-b)	-75,000	-15,000	-15,000	-15,000	-15,000	-15,000
세입(a)	0	0	0	0	0	0
세출(b)	75,000	15,000	15,000	15,000	15,000	15,000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연도별 구분	합 계	1차년도 (2019년)	2차년도 (2020년)	3차년도 (2022년)	4차년도 (2022년)	5차년도 (2023년)
합 계	75,000	15,000	15,000	15,000	15,000	15,000
국 비	-	-	-	-	-	-
도 비	0	0	0	0	0	0
시 비	75,000	15,000	15,000	15,000	15,000	15,000

5.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대상사업 : 화재취약가구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 지원
- 사업기간 : 매년
- 산 출 액 : 14,500천원
- 산출근거
 - 화재취약가구 소화기 지원사업 : 12,250천원
 - 산출 : 35,000원 × 350개 = 12,250,000원
 - 화재취약가구 단독경보형 감지기 지원 : 2,250천원
 - 산출 : 15,000원 × 150개 = 2,250,000

6. 협의사항 : 해당 없음

7. 부대의견(제도개선 등) : 해당 없음

8. 작성자

- 안전행정국 안전총괄과 과장 차재하(☎ 749-5466)
- 안전총괄팀장 채연석(☎ 749-5649)

순천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 조례안

의안 번호	제2774호
----------	--------

- 제출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18. 7. 6.

1. 제정이유

- 장년층 은퇴 이후 제2의 인생설계와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목적, 용어,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3조)
- 지원 사업 및 재정지원, 지원 시설 설치·운영(안 제4조~제6조)
- 위원회 설치, 기능,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12조)

3. 제정조례안 : 별첨

4. 관련법령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 비용추계서 참고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18. 5. 31. ~ 2018. 6. 20.) 결과 : 의견 제출자 없음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18. 3. 22.(여성가족과-11833호)
- 예산부서 심의필 : 2018. 3. 6.(행복돌봄과-2394호)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18. 3. 26.(전략기획과-3502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18. 5. 31.(순천시 공고 2018-924호)

순천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년층의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년층”이란 5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인생이모작”이란 장년층이 은퇴 전후에 새로운 인생 준비와 행복한 노후 생활을 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년층의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사업) 시장은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후준비, 직업능력 향상 등 인생이모작을 위한 교육 지원 사업
2. 취업훈련 및 일자리 지원 사업
3. 사회참여 및 사회공헌활동 지원 사업
4. 문화 및 여가 활동 지원 사업
5. 신체적, 정신적 건강증진 지원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재정 지원)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재정 지원을 위하여 지원 금액, 지원 방법 등을 포함한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재정 지원을 받은 사업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의 지원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보조금의 신청, 지원, 정산 등 보조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 시설 설치·운영) ① 시장은 제4조의 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 시설(이하 “지원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원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 지원 시설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④ 시장은 수탁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의 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순천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지원 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3.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 정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일자리 업무 담당 부서의 장
2. 순천시의회 의원 1명
3. 중장년 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자원봉사 등 사회공헌활동 전문가
5. 그 밖에 정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리한다.

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 본인이 원하거나, 질병,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시장이 해촉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제척 등) ① 회의 안전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전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회의 안전의 공정한 자문과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해당 위원을 안전의 자문 또는 심의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회의 안전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위원장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제11조(수당지급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사람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순천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 수반요인

○ 제4조(지원 사업)

시장은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호~6호)

○ 제5조(재정 지원)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 제6조(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 시설 설치·운영)

① 시장은 제4조의 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 시설(이하 “지원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2. 비용추계의 전제

○ 1차년도 장년층 인생이모작 교육·프로그램 지원을 시작으로 2차년도 지원 시설 설치에 따른 비용 지출로 세출이 높으나, 3차년도 이후에는 비용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추정됨.

○ 장년층의 인생이모작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과 지원 시설 설치로, 맞춤형 일자리 창출 효과와 함께 행복한 노후생활을 지원하는 점에서 소요 비용 보다 시민의 보편적 복지 제공에 훨씬 큰 효과가 있다고 판단됨.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천원)

연도별 구분	합 계	1차년도 (2018년)	2차년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4차년도 (2021년)	5차년도 (2022년)
총 비용(a-b)	△1,320,520	△8,320	△744,600	△189,200	△189,200	△189,200
세입(a)	37,800	-	5,400	10,800	10,800	10,800
세출(b)	1,358,320	8,320	750,000	200,000	200,000	200,000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연도별 구 분	합 계	1차년도 (2018년)	2차년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4차년도 (2021년)	5차년도 (2022년)
시 비	1,358,320	8,320	750,000	200,000	200,000	200,000

※ 1차년도 8,320천원은 2018년 본예산 확보

5.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세입 : 37,800천원

구 분	산출기초	금액(천원)	비고
합 계		37,800	
프로그램 수강료	2019 30,000원×30명×3강좌×2회 - 50+인생설계, 평생교육(건강,가드너), 전문인력양성(요양보호사, 직업코디네이터)	5,400	6개월 기준 (시설 7월 개소)
	2020~2022 30,000원×30명×3강좌×4회×3년 - 50+인생설계, 평생교육(건강,가드너, 이미지메이킹), 전문인력양성(요양 보호사, 직업코디네이터, 도시해설가)	32,400	1년 기준

○ 세출 : 1,358,320천원

구 분		산출기초	금액(천원)	비고
합 계			1,358,320	
프로그램 운영	2018	강사수당 130,000원×2강좌×월8회×4개월 - 50+인생설계, 평생교육(건강), 전문인력 양성(요양보호사)	8,320	
	2019	강사수당 130,000원×3강좌×월8회×6개월 - 50+인생설계, 평생교육(건강,가드너), 전문인력양성(요양보호사, 직업코디네이터)	18,720	
	2020~2022	강사수당 130,000원×3강좌×월8회×12개월×3년 - 50+인생설계, 평생교육(건강,가드너,이미지 메이킹), 전문인력양성(요양보호사, 직업 코디네이터, 도시해설가)	112,320	
지원 시설 리모델링 (2019년/320㎡/2층)		안전진단 5,000,000원 / 공사비 576,000,000원 설계비 30,528,000원 / 시설부대비 3,853,000원 물품취득비 30,000,000원	645,381	구 보훈 복지회관
인건비	2019	1,687,500원×8월×2명	27,000	
	2020~2022	1,687,500원×8월×4명×3년	162,000	
시설 운영비	2019	58,899,000원×1식(포털관리, 공공요금, 소모품, 홍보물 등)	58,899	
	2020~2022	108,560,000원×1식×3년	325,680	

6. 협의사항 : 해당 없음

7. 부대의견 : 해당 없음

8. 작성자

○ 민원복지국 행복돌봄과장 과장

장홍상 (☎ 749-6170)

행복돌봄팀장 박종은 (☎ 749-6172)

순천시 읍·면·동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2775호
----------	--------

○ 제출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18. 7. 6.

1. 개정이유

- 상위법령에 맞게 갱신기간과 절차를 수정

2. 주요내용

- 복지회관의 위탁기간에 관한 내용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
⇒ 복지회관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제21조제5항)

3. 개정조례안 : 별첨

4. 관련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 해당 없음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18. 6. 5. ~ 6. 25.)결과 : 의견 제출자 없음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18. 6. 4.(여성가족과-20898호)
- 예산부서 심의필 : 해당 없음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18. 5. 30.(전략기획과-5889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18. 6. 5.(순천시 공고 제2018-978호)

순천시 읍·면·동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읍·면·동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⑤ 복지회관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1조(위탁) ①~④ (생략) ⑤ <u>위탁관리기간은 2년을 원칙으로 하되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u>	제21조(위탁) ①~④ 현행과 같음 ⑤ <u>복지회관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u>

순천시 식품진흥기금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2778호
----------	--------

○ 제출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18. 7. 6.

1. 개정이유

- 상위법령 관련(식품위생법 제89조 기금 재원의 범위) 사항 정비
- 법제처에서 제시한 상위법령에 맞도록 민간전문가 비율을 조정하여 기금운용의 전문성 및 적법성 강화

2. 주요내용

- 식품위생법 제89조(식품진흥기금)에 따라 재원의 범위를 “식품위생법 제82조, 제83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으로 확대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사항 반영
- 그 밖에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정비
 - “각호의 자”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 시행일 : 공포와 동시에 시행

3. 개정조례안 : 별첨

4. 관련법령

- 식품위생법 제89조(식품진흥기금)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5. 관련부서 의견 : 의견 제출자 있음

연번	의견제출부서	제출일자	주요내용	검토결과(수용여부)
1	여성가족과	2018.5.24.	제7조(기금심의위원회 구성 등) 위촉직 구성 시 성별이 균형 있게 구성될 수 있도록 수정 요청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7조(기금심의위원회 구성 등)제2항에 위촉직 위원 선정 시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용 조례 제4조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 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내용을 반영<수용>

6. 예산상황 : 해당 없음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18. 5. 15. ~ 2018. 6. 4.) 결과 : 의견 제출자 없음

8. 사전협의(승인) 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18. 5. 24.(여성가족과-19741호)
- 예산부서 심의필 : 해당 없음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18. 5. 11.(전략기획과-5288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18. 5. 15.(순천시 공고 제2018-861호)

순천시 식품진흥기금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식품진흥기금 운영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중 “법 제82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을 “법 제82조, 제83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구성 한다.”를 “구성하되,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하며, 위촉직 위원 선정 시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각호의 자”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기금의 조성) (생략) 1. (생략) 2. <u>법 제82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u> 3.~4. (생략)	제3조(기금의 조성)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u>법 제82조, 제83조 및 건강기능식품 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u> 3.~4. (현행과 같음)
제7조(기금심의위원회 구성 등) ① (생략)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 내의 위원으로 <u>구성 한다.</u> ③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위원은 <u>각호의 자중에서</u>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시 소속공무원은 해당 직위에 발령됨과 동시에 임명된 것으 로 본다. 1. (생략) 2. <u>기금관리에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자</u> 3. (생략) ④~⑤ (생략)	제7조(기금심의위원회 구성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u>구성하되, 제3항제2호에 해 당하는 사람이 3분의 1이상 참여하도 록 하여야 하며, 위촉직 위원 선정 시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u> ③ ----- <u>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u> ----- ----- ----- ----- 1. (현행과 같음) 2. <u>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 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u> 3. (현행과 같음) ④~⑤ (현행과 같음)

순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2772호
----------	--------

○ 제출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18. 7. 6.

1. 개정이유

- 관광지의 개선사항이나 불편사항 등에 대한 ‘제보’ 활동만 가능했던 『관광모니터』를 ‘홍보’ 활동까지 가능한 『관광홍보 모니터단』으로 개정하여 홍보단 운영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관광자원 개발 및 체류형 관광 육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순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의 일부개정을 통한 내용 정비

2. 주요내용

- 제보하고 홍보 활동까지 가능한 표현 개정
 - ‘관광모니터’를 ‘관광홍보 모니터단’으로 개정(제8장, 제26조)
 - ‘제보하는’을 ‘제보하고 홍보 활동을 하는’으로 개정(제26조, 29조, 제30조, 제31조)
 - ‘그 내용의 효용도에 따라 예산의’를 ‘예산의’로 개정(제31조)

3. 개정조례안 : 별첨

4. 관련법령 : 관광진흥법 제48조(관광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 비용추계서 첨부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16. 5. 31. ~ 6. 20.)결과 : 의견 제출자 없음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18. 5. 24.(여성가족과-19741호)
- 예산부서 심의필 : 해당 없음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18. 5. 29.(전략기획과-5860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18. 5. 31.(순천시 공고 제2018-951호)

순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장 제목 “관광모니터”를 “관광홍보 모니터단”으로 한다

제26조 제목 “관광모니터”를 “관광홍보 모니터단”으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제보하는 관광모니터를”을 “제보하고 홍보 활동을 하는 관광홍보 모니터단을”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관광모니터”를 “관광모니터(이하 ”모니터“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관광모니터”를 “모니터”로 한다.

제28조 중 “관광모니터”를 “모니터”로 한다.

제29조 각 호 외 본문 중 “관광모니터”를 “모니터”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관광모니터의 제보”를 “모니터의 제보·홍보 활동”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관광모니터”를 “모니터”로 한다.

제30조제1항 중 “관광모니터”를 “모니터”로, “제보”를 “제보·홍보”으로 한다.

제31조제1항 중 “제보”를 “제보·홍보 활동”으로, “관광모니터에게 그 내용의 효용도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를 “모니터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8장 <u>관광모니터</u>	제8장 <u>관광홍보 모니터단</u>
제26조(<u>관광모니터</u>) 시장은 질 높은 관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관광지의 개선사항이나 불편사항 등을 <u>제보</u> 하는 <u>관광모니터</u> 를 운영할 수 있다.	제26조(<u>관광홍보 모니터단</u>) ----- ----- ----- <u>제보</u> 하고 <u>홍보</u> 활동을 하는 <u>관광홍보 모니터단</u> 을 -----.
제27조(위촉) ① <u>관광모니터</u> 는 순천에 거주하는 내국인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고, 읍면동장의 의견을 들어 시장이 위촉한다.	제27조(위촉) ① <u>관광모니터</u> (이하 “ <u>모니터</u> ” 라 한다)----- ----- -----.
② <u>관광모니터</u> 는 지역, 직업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u>모니터</u> ----- ----- ----- -----.
제28조(임기) <u>관광모니터</u> 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28조(임기) <u>모니터</u> ----- -----.
제29조(해촉) 시장은 <u>관광모니터</u>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29조(해촉) ----- <u>모니터</u> ----- ----- ----- -----.
1 ~ 2 (생략)	1 ~ 2 (현행과 같음)
3. <u>관광모니터</u> 의 <u>제보</u> 실적이 현저히 저조한 때	3. <u>모니터</u> 의 <u>제보·홍보</u> 활동 ----- -----
4. <u>관광모니터</u> 가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4. <u>모니터</u> ----- -----
제30조(신분증) ① 시장은 <u>관광모니터</u>	제30조(신분증) ① ----- <u>모니터</u>

가 원활하게 <u>제보</u>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② (생략)	----- <u>제보·홍보</u>----- ----- ② (현행과 같음)
제31조(보상금) ① <u>제보</u>한 실적이 있는 <u>관광모니터에게 그 내용의 효용도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u>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생략)	제31조(보상금) ① <u>제보·홍보 활동</u>----- <u>모니터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u> --- ----- -----. ② (현행과 같음)

순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관련조문)

- 안 제31조(보상금) : ① 제보·홍보 활동한 실적이 있는 모니터단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2. 비용추계의 전제

- 관광홍보 모니터단으로서 지역의 관광지에 대한 개선사항이나 불편사항 등을 제보하거나, 순천 여행지 및 축제·행사 등의 홍보를 위한 순천관광 홍보부스 운영시 활동비 지원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천원)

연도별 구분	합 계	1차년도 (2017년)	2차년도 (2018년)	3차년도 (2019년)	4차년도 (2020년)	5차년도 (2021년)
총 비용(a-b)	-43,200	0	-21,600	-21,600	0	0
세입(a)	0	0	0	0	0	0
세출(b)	-43,200	0	21,600	21,600	0	0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연도별 구분	합 계	1차년도 (2017년)	2차년도 (2018년)	3차년도 (2019년)	4차년도 (2020년)	5차년도 (2021년)
합 계	43,200	0	21,600	21,600	0	0
국 비	-	-	-	-	-	-
도 비	-	-	-	-	-	-
시 비	43,200	0	21,600	21,600	0	0
자체수입	-	-	-	-	-	-
지방채	-	-	-	-	-	-
기 금	-	-	-	-	-	-
특별회계	-	-	-	-	-	-
기타(민자 등)	-	-	-	-	-	-

5. 비용추계의 상세내역(산출기초 등)

- 대상사업 : 1개 단위사업
- 사업기간 : 2018 ~ 2019년
- 산 출 액(2018 ~ 2019년) : 43,200천원
- 산출근거(2018 ~ 2019년)
 - 관광홍보 모니터단 216명 × 4회(1년에 2회) × 50,000원 = 43,200천원
 - 대상 : 구석구석 순천여행 홍보·모니터단 216명

6. 협의사항

- 해당 없음

7. 부대의견(제도개선 등)

- 해당없음

8. 작성자

- 경제관광국 관광진흥과 과장 채승연(☎ 749-5500)
- 관광마케팅담당 신순옥(☎ 749-5794)

순천시 관광홍보달력 제작 및 배부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제2773호
----------	--------

○ 제출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18. 7. 6.

1. 제정이유

- 순천의 다양한 관광지, 문화예술 행사를 홍보하기 위한 관광홍보달력을 제작하고 한국관광공사 등 여행업 관련 기관 및 관내·외 다중이용 시설에 관광홍보 달력을 배부하여 관광객 방문 및 체류 유도

2. 주요내용

- 관광홍보달력 제작 목적 및 배부(안 제1조, 제2조)
- 관광홍보달력 제작규격 및 종류(안 제3조)
 - 가로형과 세로형으로 구분, 액자용과 탁상용을 따로 제작할 수 있음
- 관광홍보달력 수록 내용(안 제4조)
 - 관광자원 사진 및 설명
 - 순천시 로고와 시정구호
 - 각종 축제, 행사내용 및 흑두루미의 날 등 생태관광 홍보에 필요한 사항
 - 그 밖에 관광홍보에 필요한 사항 등
- 관광홍보달력배부 대상 및 방법(안 제 5조)
 -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 및 언론사 및 한국관광공사 등
 -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및 관광안내소
 - 시 관내 각급 학교, 기관단체 및 관내 다중이용시설 등

3. 제정조례안 : 별첨

4. 관련법령 : 관광진흥법 제48조(관광 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 비용추계서 첨부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18. 5. 31. ~ 6. 20.)결과 : 의견제출자 없음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18. 5. 31.(여성가족과-20501호)
- 예산부서 심의필 : 해당 없음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18. 5. 30.(전략기획과-5872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18. 5. 31.(순천시 공고 제2018-950호)

순천시 관광홍보달력 제작 및 배부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천시의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관광자원 및 4계절 문화 예술 행사의 홍보를 위하여 관광홍보달력의 제작·배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작 및 배부)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광홍보달력(이하 “달력”이라 한다)을 예산의 범위에서 제작하여 무료로 배부할 수 있다.

제3조(규격 및 종류) 달력은 가로형과 세로형으로 구분하고, 액자용과 탁상용 등을 따로 제작 할 수 있다.

제4조(게재 사항) 달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할 수 있다.

1. 관광자원 사진 및 설명
2.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 로고와 시정구호
3. 각종 축제 및 행사내용
4. 절기 등 전통민속과 음력, 흑두루미의 날 등 생태관광 홍보 관련 내용
5. 그 밖에 관광홍보에 필요한 사항 등

제5조(배부 대상 및 방법) ① 달력의 무료 배부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 및 언론사
2. 한국철도공사(기차역 포함) 및 한국관광공사
3. 한국관광협회 및 여행사협회 회원사
4.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및 관광안내소
5. 시 관내 각급 학교 및 기관단체
6. 시 산하 단체, 마을회관 및 시에서 관리하는 시설
7. 시 관내 음식점·숙박업소, 대형마트, 버스터미널 등 다중 이용시설
8. 그 밖에 관광홍보에 필요한 시설·단체 및 관련 업체

② 제1항에 따른 관광홍보달력은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행정조직을 통하여 배부할 수 있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순천시 관광홍보달력 제작 및 배부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관련조문)

- 순천시장은 관광홍보달력을 예산의 범위에서 제작하여 무료로 배부할 수 있다.

2. 비용추계의 전제

- 관광홍보달력 제작 및 배부 비용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연도별 구분	합 계	1차년도 (2018년)	2차년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4차년도 (2021년)	5차년도 (2022년)
총 비용(a-b)	-183,160	-29,660	-34,650	-39,650	-39,600	-39,600
세입(a)	1,840	340	350	350	400	400
세출(b)	185,000	30,000	35,000	40,000	40,000	40,000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연도별 구분	합 계	1차년도 (2018년)	2차년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4차년도 (2021년)	5차년도 (2022년)
합 계	185,000	30,000	35,000	40,000	40,000	40,000
시 비	185,000	30,000	35,000	40,000	40,000	40,000

5.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제작수량 : 4,500부
- 제작종류 : 탁상형(2,000부), 액자형(300부), 벽걸이형(2,200부)

○ 세부산출 내역(세출)

- 액자형, 벽걸이형: 6,800원 × 2,500부 = 17,000천원
- 탁상형: 6,500원 × 2,000부 = 13,000천원

○ 세부산출 내역(세입)

- 개인구매 희망자 달력판매 금액: 제작원가 × 50부 = 340천원

※ 기존 관광홍보달력 판매 세외수입 현황

2016년: 30천원/ 2017년: 110천원/ 2018년: 510천원

6. 협의사항 : 해당 없음

7. 부서의견 : 해당 없음

8. 작성자

○ 경제관광국 관광진흥과 과장 채승연(☎749-5500)
관광마케팅팀 신순옥(☎749-5794)

순천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안 번호	제2779호
----------	--------

○ 제출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18. 7. 6.

1. 폐지이유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 개정으로 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명시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순천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3. 폐지조례안 : 별첨

4. 관련법령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5. 관련부서 및 주민의견 :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 해당 없음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18. 5. 15. ~ 6. 4.) 결과 : 의견제출자 없음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없음
- 예산부서 심의필 : 해당 없음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18. 5. 14. (전략기획과-5411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18. 5. 15. (순천시 공고 제2018-868호)

순천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순천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순천시 새마을소득사업 운영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의안 번호	제2780호
----------	--------

○ 제출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18. 7. 6.

1. 폐지이유

- 새마을소득사업 일몰(2006년)에 따른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현행 「순천시 새마을소득사업 운영 관리 조례」 폐지

3. 폐지조례안 : 별첨

4. 관련법령 : 해당 없음

5. 관련부서 및 주민의견 :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 해당 없음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18. 5. 15. ~ 6. 4.) 결과 : 의견 제출자 없음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없음
- 예산부서 심의필 : 해당 없음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18. 5. 14. (전략기획과-5411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18. 5. 15. (순천시 공고 제2018-869호)

순천시 새마을소득사업 운영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순천시 새마을소득사업 운영 관리 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순천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반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2781호
----------	--------

○ 제출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18. 7. 6.

1. 개정이유

- 임대료 결제방식에 카드사용 추가 조항과 행정안전부/법제처 개선요구 사항인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을 위반한 내용을 삭제 및 개정하여 주민 편의를 증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임대료 및 부품대금 납부방법 변경(제8조3항)
- 임대농업기계 계약 취소 및 정지 조항 삭제(제11조2항)
- 임대농업기계 사용자의 책임 및 변상 조항 삭제(제12조3항)

3. 개정조례안 : 별첨

4. 관련법령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5. 관련부서의견 :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 해당 없음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18. 2. 28. ~ 2018. 3. 20.) 결과 : 의견제출자 없음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18. 2. 23.(여성가족과-7100호)
- 예산부서 심의필 : 해당 없음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18. 2. 26.(전략기획과-2318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18. 2. 28.(순천시 농업기술센터 공고 제2018-2호)

순천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반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반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발급받아 제1항에 따른 임대료를 순천시 금고에”를 “발급받거나 카드결제시스템을 통한 결제방법 중 선택하여 임대료를”로 한다.

제11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2조제3항을 삭제한다.

별지 제2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호서식]

농업기계 임대차 계약서(제6조 관련)

임 대 인	임 차 인	
순천시농업기술센터소장 북부(송주읍) : 061)749-4681 남부(덕월동) : 061)749-4888	주 소	
	성 명	
	전화번호	

임대차 농업기계

농기계명		수 량	대
부 속 작 업 기		수 량	대
		수 량	대
임대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		
임 대 료	금 원		

농업기계 사용계획

기 계 명		작업종류	
마 력		작업장소	
기대번호		작업면적	m ² (평)

임 대 차 계 약 조 건

1. 임대기간 만료 시에는 농업기계를 깨끗이 세척한 후 지체 없이 반납한다.
2. 사용 후 보관 시에는 비나 눈을 맞지 않도록 보관한다.(1일 이상 사용자)
3. 임대 후 발생한 고장수리비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4. 농작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임의로 대여할 수 없다.
5. 운전미숙, 부주의 등 임차인 과실로 발생한 고장은 임차인이 수리한다.
6. 임차 중 농업기계를 분실 또는 파손하였을 경우 임차인이 변상한다.
7. 임대기간 중 농업기계의 수리비, 연료비, 농작업상해공제 등은 임차인이 부담한다.
8. 임차인이 「순천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반 설치·운영 조례」 및 위 사항을 위반할 시에는 추후 농업기계 임대를 제한한다.
9. 이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

※ 권고 :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으로 농기계 사고시 농업인 부담 경감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본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농업기계 임대 서류 제출시 개인정보(성명, 주소, 연락처 등) 활용에 동의합니다.

위와 같이 농업기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함.

년 월 일

임 대 인 : 순천시농업기술센터소장 (인)

임 차 인 : (인)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8조(임대료 및 부품대금) ① ~ ② (생략) ③ 농업기계를 임대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농업기계 임대사업장에서 OCR고지서를 발급받아 제1항에 따른 임대료를 <u>순천시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u> ④ ~ ⑦ (생략)	제8조(임대료 및 부품대금)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u>발급받거나 카드결제시스템을 통한 결제방법 중 선택하여 임대료를 -----.</u> ④ ~ ⑦ (현행과 같음)
제11조(임대계약 취소 및 정지) ① (생략) ② <u>제1항의 허가취소 및 정지 등으로 발생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시장은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u>	제11조(임대계약 취소 및 정지) ① (현행과 같음) <u><삭 제></u>
제12조(사용자의 책임 및 변상) ① ~ ② (생략) ③ <u>농업기계를 출고한 후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일체의 인적, 물적 피해에 대하여 사용자가 책임을 진다.</u>	제12조(사용자의 책임 및 변상) ① ~ ② (현행과 같음) <u><삭 제></u>

현 행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2.09.21>

농업기계 임대차 계약서(제6조 관련)

임 대 인	임 차 인
순천시농업기술센터소장 북부(송주읍) : 061)749-8700 남부(덕월동) : 061)749-3901	주 소 성 명 전화번호

임대차 농업기계

농기계명	수 량	대
부 속 작 업 기	수 량	대
임대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일)	
임 대 료	금 원	계좌번호

농업기계 사용 계획

기 계 명	작업종류
마 력	작업장소
기대번호	작업면적 m ² (평)

임 대 차 계 약 조 건

- 임대기간 만료 시에는 농업기계를 깨끗이 세척한 후 지체 없이 반납한다.
- 사용 후 보관 시에는 비나 눈을 맞지 않도록 보관한다.(1일 이상 사용자)
- 임대 후 발생한 고장수리비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 농작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임의로 대여할 수 없다.
- 운전미숙, 부주의 등 임차인 과실로 발생한 고장은 임차인이 수리한다.
- 농업기계 사용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 임차 중 농업기계를 분실 또는 파손하였을 경우 임차인이 변상한다.
- 임대기간 중 농업기계의 수리비, 연료비, 농작업상해공제 등은 임차인이 부담한다.
- ※ 안전사고에 대비 임차인은 농작업상해공제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 임차인이 「순천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반 설치·운영 조례」 및 위 사항을 위반할 시에는 추후 농업기계 임대료를 제한한다.
- 이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

위와 같이 농업기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함.

년 월 일

임 대 인 : 순천시농업기술센터소장 (인)
임 차 인 : (인)

개 정 안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2.09.21>

농업기계 임대차 계약서(제6조 관련)

임 대 인	임 차 인
순천시농업기술센터소장 북부(송주읍) : 061)749-4681 남부(덕월동) : 061)749-4888	주 소 성 명 전화번호

임대차 농업기계

농기계명	수 량	대
부 속 작 업 기	수 량	대
임대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	
임 대 료	금 원	

농업기계 사용계획

기 계 명	작업종류
마 력	작업장소
기대번호	작업면적 m ² (평)

임 대 차 계 약 조 건

- 임대기간 만료 시에는 농업기계를 깨끗이 세척한 후 지체 없이 반납한다.
- 사용 후 보관 시에는 비나 눈을 맞지 않도록 보관한다.(1일 이상 사용자)
- 임대 후 발생한 고장수리비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 농작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임의로 대여할 수 없다.
- 운전미숙, 부주의 등 임차인 과실로 발생한 고장은 임차인이 수리한다.
- 임차 중 농업기계를 분실 또는 파손하였을 경우 임차인이 변상한다.
- 임대기간 중 농업기계의 수리비, 연료비, 농작업상해공제 등은 임차인이 부담한다.
- 임차인이 「순천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반 설치·운영 조례」 및 위 사항을 위반할 시에는 추후 농업기계 임대료를 제한한다.
- 이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
- ※ 권고 :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으로 농기계 사고시 농업인 부담 경감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본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농업기계 임대 서류 제출시 개인정보(성명, 주소, 연락처 등) 활용에 동의합니다.

위와 같이 농업기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함.

년 월 일

임 대 인 : 순천시농업기술센터소장 (인)
임 차 인 : (인)

순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2783호
----------	--------

○ 제출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18. 7. 6.

1. 개정이유

- 법제처에서 제시한 상위법령 관련(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사항 정비
-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청소년수련시설 위탁 운영 관련 현행 법령 부패영향평가 권고안」에 따라 위탁운영 관련내용 정비

2. 주요내용

- 청소년수련관 관리 운영 위탁가능 대상을 청소년단체로 한정
- 수탁자 선정 절차 및 위탁기간 명확화
 - 수탁자 선정은 공개모집 및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심의·의결
 - 위탁기간을 5년 이내로 명확히 규정, 1회에 한하여 위탁기간 범위 내에서 재계약 가능
-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이해충돌방지 규정 마련
-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 따라 사용료 반환규정 명확화

3. 개정조례안 : 별첨

4. 관련법령

- 「청소년기본법」 제18조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6조
- 「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 해당 없음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18. 3. 16. ~ 4. 5.)결과 : 의견 제출자 없음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18. 2. 26.(여성가족과-7300호)
- 예산부서 심의필 : 해당 없음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18. 2. 26.(전략기획과-2320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18. 3. 14.(순천시 공고 제2018-516호)

순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그 관리운영을 청소년단체나 비영리 법인 등에”를 “청소년단체에”로 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위탁운영) ① 시장이 제5조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하고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 할 때에는 위탁 업무의 내용, 위탁 계약의 기간·조건·해지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위탁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위탁기간 범위내에서 재계약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재계약 할 때에는 위탁사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3(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① 시장은 수련관의 운영에 관한 수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청소년수련관업무 담당 국장, 청소년수련관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그 밖에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순천시의회 의원 2명

2. 청소년 관련 분야 전문가

3. 그 밖에 청소년 분야의 전문지식과 현장경험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사람

-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수탁신청기관의 사업계획서를 검토하고 필요시 현장확인 및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⑥ 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청소년수련관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 ⑦ 위원회는 심의가 끝나면 자동으로 해산한다.

제5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5조의4(심의위원의 제척 등) ① 심의위원이 해당 안전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 ② 해당 안전의 당사자는 심의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 대상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③ 심의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전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3조 제목 “사용료 감면 등” 을 “사용료 등의 감면”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 본문 중 “시설사용료” 를 “사용료” 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 본문 중 “교육수강료” 를 “수강료” 로 한다.

제14조 제목 “사용료 반환” 을 “사용료 등의 반환”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 본문 중 “반환 할 수 있다” 를 “반환하여야 한다” 로 하며,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 본문 중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개강일 이후 수강 취소원” 을 “수강 취소원” 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청소년수련관 시설사용료 및 교육수강료(제10조와 관련)

1. 시설사용료(단체편의시설)

시 설 명	사용기준	사 용 료		참 고
		평 일	토·일요일	
소 극 장	주간 2시간	30,000원	40,000원	시간 초과시 시간당 10,000원
	야간 2시간	50,000원	60,000원	
	1일	90,000원	100,000원	야간요금별도징수
영 화 관	주간 2시간	50,000원	60,000원	시간 초과시 시간당 20,000원
	야간 2시간	70,000원	80,000원	
	1일	150,000원	160,000원	야간요금별도징수
야외공연무대	주간 3시간	50,000원	60,000원	시간 초과시 시간당 20,000원
	야간 3시간	70,000원	80,000원	
	1일	110,000원	120,000원	야간요금별도징수

시 설 명	사용기준	사 용 료		참 고
		청소년	일 반	
체력단련실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무 료	월 10,000원	
댄스연습실	2 시 간 (기본사용시간)	무 료	평 일 20,000원 토,일휴일 30,000원	기본 사용 시간 초과시 시간당 5,000원
창 극 실 동아리실 어울림실	2 시 간 (기본사용시간)	무 료	평 일 15,000원 토,일휴일 20,000원	기본 사용 시간 초과시 시간당 5,000원

※ 주간 09:00~18:00, 야간 18:00~21:00

2. 부대시설 사용료(기본 사용시간 요금)

○ 영 화 관

•특수조명 : 20,000원 •음 향 : 20,000원 •냉·난방 : 50,000원

○ 소 극 장

•비디오프로젝트 : 20,000원 •음 향 : 10,000원 •냉·난방 : 20,000원

○ 댄스연습실 ○ 창극실 ○ 어울림실 ○ 동아리실

•냉·난방 : 10,000원

○ 야외공연무대

•조명 : 20,000원 •음 향 : 10,000원 •냉·난방 : 5,000원

※ 추가조명 설치 사용시 시간당 10,000원 추가

○ 마이크 기본(2개) : 5,000원 • 1개 추가 : 3,000원

※ 기본시간은 2시간(야외공연무대는 3시간)으로 하며, 사용시간 초과시 기준금액의 20% 매시간 가산

3. 교육수강료

(단위 : 원)

구 분	기 준	수 강 료	비 고
취미·교양	1개월	•청소년 : 무료 •성 인 : 10,000~15,000	○ 재료비 별도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운영) ①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련관을 관리 운영하거나 「청소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 제3항에 따라 그 관리운영을 청소년단체나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운영) ① ----- ----- ----- ----- 청소년단체에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u><신 설></u>	제5조의2(위탁운영) ① 시장이 제5조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하고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 할 때에는 위탁 업무의 내용, 위탁 계약의 기간·조건·해지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위탁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위탁기간 범위내에서 재계약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재계약 할 때에는 위탁사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현행	개정안
<신설>	⑤ 시장은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의3(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① 시장은 수련관의 운영에 관한 수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청소년수련관업무 담당 국장, 청소년수련관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그 밖에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순천시의회 의원 2명 2. 청소년 관련 분야 전문가 3. 그 밖에 청소년 분야의 전문지식과 현장경험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사람

현행	개정안
<u><신 설></u>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수탁신청기관의 사업계획서를 검토하고 필요시 현장확인 및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⑥ 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청소년수련관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⑦ 위원회는 심의가 끝나면 자동으로 해산한다. 제5조의4(심의위원의 제척 등) ① 심의위원이 해당 안전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해당 안전의 당사자는 심의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 대상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심의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전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현행	개정안
제13조(사용료 감면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u>시설사용료</u>를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 1. ~ 2. (생략)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u>교육수강료</u>를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 1. ~ 9. (생략)	제13조(사용료 등의 감면) ① ----- ----- ----- <u>사용료</u>----- ----- 1. ~ 2. (현행과 같음) ② ----- ----- <u>수강료</u>----- ----- 1. ~ 9. (현행과 같음)
제14조(사용료 반환) ①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료 전액을 <u>반환</u>할 수 있다. 1. ~ 2. (생략) 3. 시설 사용 또는 개강일 전일까지 <u>사용수강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u>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개강일 이후 수강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에는 「소비자분쟁 해결기준」 중 해당 기준에 의거 수강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또한 시설사용개시일 이후에 <u>사용취소원을 제출한 경우는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납부금의 10%를 공제 후 반환한다.</u>	제14조(사용료 등의 반환) ① ----- ----- ----- ----- <u>반환</u> <u>하여야 한다.</u> 1. ~ 2. (현행과 같음) <u><삭 제></u> ② <u>수강 취소원</u>----- ----- ----- ----- ----- <u><후단삭제></u>

현행	개정안																																																																																						
[별표] 청소년수련관 시설사용료 및 교육수강료(제10조와 관련) 1. 시설사용료(단체편의시설) <table><tr><th rowspan="2">시설명</th><th rowspan="2">사용기준</th><th colspan="2">사 용 료</th><th rowspan="2">참 고</th></tr><tr><th>평 일</th><th>토일요일</th></tr><tr><td rowspan="3">소극장</td><td>주간 2시간</td><td>30,000원</td><td>40,000원</td><td rowspan="2">시간 초과시 시간당 10,000원</td></tr><tr><td>야간 2시간</td><td>50,000원</td><td>60,000원</td></tr><tr><td>1일</td><td>90,000원</td><td>100,000원</td><td>야간요금별도징수</td></tr><tr><td rowspan="3">영화관</td><td>주간 2시간</td><td>50,000원</td><td>60,000원</td><td rowspan="2">시간 초과시 시간당 20,000원</td></tr><tr><td>야간 2시간 (21시까지)</td><td>70,000원</td><td>80,000원</td></tr><tr><td>1일</td><td>150,000원</td><td>160,000원</td><td>야간요금별도징수</td></tr><tr><td rowspan="3">야외공연무대</td><td>주간 3시간</td><td>50,000원</td><td>60,000원</td><td rowspan="2">시간 초과시 시간당 20,000원</td></tr><tr><td>야간 3시간 (18시 ~ 21시)</td><td>70,000원</td><td>80,000원</td></tr><tr><td>1일</td><td>110,000원</td><td>120,000원</td><td>야간요금별도징수</td></tr></table>	시설명	사용기준	사 용 료		참 고	평 일	토일요일	소극장	주간 2시간	30,000원	40,000원	시간 초과시 시간당 10,000원	야간 2시간	50,000원	60,000원	1일	90,000원	100,000원	야간요금별도징수	영화관	주간 2시간	50,000원	60,000원	시간 초과시 시간당 20,000원	야간 2시간 (21시까지)	70,000원	80,000원	1일	150,000원	160,000원	야간요금별도징수	야외공연무대	주간 3시간	50,000원	60,000원	시간 초과시 시간당 20,000원	야간 3시간 (18시 ~ 21시)	70,000원	80,000원	1일	110,000원	120,000원	야간요금별도징수	[별표] 청소년수련관 시설사용료 및 교육수강료(제10조와 관련) 1. 시설사용료(단체편의시설) <table><tr><th rowspan="2">시설명</th><th rowspan="2">사용기준</th><th colspan="2">사 용 료</th><th rowspan="2">참 고</th></tr><tr><th>평 일</th><th>토일요일</th></tr><tr><td rowspan="3">소극장</td><td>주간 2시간</td><td>30,000원</td><td>40,000원</td><td rowspan="2">시간 초과시 시간당 10,000원</td></tr><tr><td>야간 2시간</td><td>50,000원</td><td>60,000원</td></tr><tr><td>1일</td><td>90,000원</td><td>100,000원</td><td>야간요금별도징수</td></tr><tr><td rowspan="3">영화관</td><td>주간 2시간</td><td>50,000원</td><td>60,000원</td><td rowspan="2">시간 초과시 시간당 20,000원</td></tr><tr><td>야간 2시간 <삭 제></td><td>70,000원</td><td>80,000원</td></tr><tr><td>1일</td><td>150,000원</td><td>160,000원</td><td>야간요금별도징수</td></tr><tr><td rowspan="3">야외공연무대</td><td>주간 3시간</td><td>50,000원</td><td>60,000원</td><td rowspan="2">시간 초과시 시간당 20,000원</td></tr><tr><td>야간 3시간 <삭 제></td><td>70,000원</td><td>80,000원</td></tr><tr><td>1일</td><td>110,000원</td><td>120,000원</td><td>야간요금별도징수</td></tr></table>	시설명	사용기준	사 용 료		참 고	평 일	토일요일	소극장	주간 2시간	30,000원	40,000원	시간 초과시 시간당 10,000원	야간 2시간	50,000원	60,000원	1일	90,000원	100,000원	야간요금별도징수	영화관	주간 2시간	50,000원	60,000원	시간 초과시 시간당 20,000원	야간 2시간 <삭 제>	70,000원	80,000원	1일	150,000원	160,000원	야간요금별도징수	야외공연무대	주간 3시간	50,000원	60,000원	시간 초과시 시간당 20,000원	야간 3시간 <삭 제>	70,000원	80,000원	1일	110,000원	120,000원	야간요금별도징수
시설명			사용기준	사 용 료		참 고																																																																																	
	평 일	토일요일																																																																																					
소극장	주간 2시간	30,000원	40,000원	시간 초과시 시간당 10,000원																																																																																			
	야간 2시간	50,000원	60,000원																																																																																				
	1일	90,000원	100,000원	야간요금별도징수																																																																																			
영화관	주간 2시간	50,000원	60,000원	시간 초과시 시간당 20,000원																																																																																			
	야간 2시간 (21시까지)	70,000원	80,000원																																																																																				
	1일	150,000원	160,000원	야간요금별도징수																																																																																			
야외공연무대	주간 3시간	50,000원	60,000원	시간 초과시 시간당 20,000원																																																																																			
	야간 3시간 (18시 ~ 21시)	70,000원	80,000원																																																																																				
	1일	110,000원	120,000원	야간요금별도징수																																																																																			
시설명	사용기준	사 용 료		참 고																																																																																			
		평 일	토일요일																																																																																				
소극장	주간 2시간	30,000원	40,000원	시간 초과시 시간당 10,000원																																																																																			
	야간 2시간	50,000원	60,000원																																																																																				
	1일	90,000원	100,000원	야간요금별도징수																																																																																			
영화관	주간 2시간	50,000원	60,000원	시간 초과시 시간당 20,000원																																																																																			
	야간 2시간 <삭 제>	70,000원	80,000원																																																																																				
	1일	150,000원	160,000원	야간요금별도징수																																																																																			
야외공연무대	주간 3시간	50,000원	60,000원	시간 초과시 시간당 20,000원																																																																																			
	야간 3시간 <삭 제>	70,000원	80,000원																																																																																				
	1일	110,000원	120,000원	야간요금별도징수																																																																																			
<신 설> 2. 부대시설 사용료(기본 사용시간 요금) ○ 영화관 •특수조명 : 20,000원 •음향 : 20,000원 •냉난방 : 50,000원 ○ 소극장 •비디오프로젝트 : 20,000원 •음향 : 10,000원 •냉난방 : 20,000원 ○ 댄스연습실 ○ 창극실 ○ 어울림실 ○ 동아리실 •냉난방 : 10,000원 ○ 야외공연무대 •조명 : 20,000원 •음향 : 10,000원 •냉난방 : 5,000원 ※ 추가조명 설치 사용시 시간당 10,000원 추가 ○ 마이크 기본(2개) : 5,000원 • 1개 추가 : 3,000원 ○ 그 밖에 강좌 프로그램은 프로그램 특성에 맞게 청소년 및 일반인 차등 수강료 책정 ※ 기본시간은 2시간(야외공연무대는 3시간)으로 하며, 사용시간 초과시 기준금액의 20% 매시간 가산 ※ 주간 09:00~18:00, 야간 18:00~21:00 2. 부대시설 사용료(기본 사용시간 요금) ○ 영화관 •특수조명 : 20,000원 •음향 : 20,000원 •냉난방 : 50,000원 ○ 소극장 •비디오프로젝트 : 20,000원 •음향 : 10,000원 •냉난방 : 20,000원 ○ 댄스연습실 ○ 창극실 ○ 어울림실 ○ 동아리실 •냉난방 : 10,000원 ○ 야외공연무대 •조명 : 20,000원 •음향 : 10,000원 •냉난방 : 5,000원 ※ 추가조명 설치 사용시 시간당 10,000원 추가 ○ 마이크 기본(2개) : 5,000원 • 1개 추가 : 3,000원 <삭 제> ※ 기본시간은 2시간(야외공연무대는 3시간)으로 하며, 사용시간 초과시 기준금액의 20% 매시간 가산																																																																																							

현행				개정안			
3. 교육수강료 (단위 : 원)				3. 교육수강료 (단위 : 원)			
구분	기준	수강료	비고	구분	기준	수강료	비고
취마·교양	1개월	5,000~10,000(청소년)	○ 재료비 별도	취마·교양	1개월	•청소년 : 무료	○ 재료비 별도
		10,000~15,000(성인)				•성인 : 10,000~15,000	

순천시 농어촌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의안 번호	제2776호
----------	--------

○ 제출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18. 7. 6.

1. 폐지이유

- 농어촌 주택개량을 위한 재원확보로 특별회계 운용 불필요

2. 주요내용

- 「순천시 농어촌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폐지함

3. 폐지조례안 : 별첨

4. 관련법령 : 없음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 해당 없음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18. 2. 28 ~ 3. 20) 결과 : 의견 제출자 없음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없음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예산부서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18. 2. 26 (전략기획과-2317)
- 법제부서 공고필 : 2018. 2. 28 (순천시 공고 제2018-401호)

순천시 농어촌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순천시 농어촌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순천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2777호
----------	--------

- 제출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18. 7. 6.

1. 개정이유

- 법제처에서 제시한 상위법령(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맞도록 민간전문가 참여비율을 조정하여 기금운용의 전문성 및 적법성 강화

2. 주요내용

- 위원회의 구성인원 : 7명 이내
 -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3분의 1 이상 참여
 - 옥외광고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자로서 당해 분야를 대표 하는 자
- 위원회의 임기 : 2년, 한 번만 연임

3. 개정조례안 : 별첨

4. 관련법령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 해당 없음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18. 5 . 15. ~ 6. 4.)결과 : 의견제출자 없음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18. 5. 4.(여성가족과-17550호)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예산부서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18. 5. 9.(전략기획과-5201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18. 5. 15.(순천시 공고 제2018-842호)

순천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옥외광고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예산업무 담당과장, 옥외광고업무 담당과장(당연직)
2.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3. 옥외광고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자로서 당해 분야를 대표 하는 자

⑤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임명된 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4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제8조 제1항 제1호의 “도시건설국장”을 “옥외광고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제2호의 “광고물담당주사”를 “옥외광고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u>기금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그 구성과 운영은 「순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른 옥외광고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u>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u>기금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u> ② <u>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u> ③ <u>위원장은 옥외광고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u> ④ <u>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u> 1. <u>예산업무 담당과장, 옥외광고업무 담당과장(당연직)</u> 2. <u>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u> 3. <u>옥외광고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자로서 당해 분야를 대표 하는 자</u> ⑤ <u>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임명된 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4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u>
제8조(회계공무원) ① <u>시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 · 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u> 1. <u>기금운용관 : 도시건설국장</u> 2. <u>기금출납원 : 광고물담당주사</u> ② (생 략)	제8조(회계공무원) ① ----- ----- ----- 1. <u>기금운용관 : 옥외광고업무 담당국장</u> 2. <u>기금출납원 : 옥외광고업무 담당팀장</u> ② (현행과 같음)

순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2782호
----------	--------

- 제출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18. 7. 6.

1. 개정이유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내용을 정비

2. 주요내용

- 개방화장실 자격 대상 규모를 완화하여 적용(안 제12조제1항)
- 과태료 부과기준을 삭제

3. 개정조례안 : 별첨

4. 관련법령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 해당 없음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18. 6. 1. ~ 6. 21.)결과 : 의견 제출자 없음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18. 5. 28.(여성가족과-20072호)
- 예산부서 심의필 : 해당 없음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18. 5. 29.(전략기획과-5836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18. 6. 1.(순천시 맑은물관리센터 하수도과 공고 제2018-5호)

순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영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영 제3조제2항 각 호에 정하는 규모 미만의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유동인구를 고려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제6장 과태료 부과를 삭제한다.

제18조를 삭제한다.

제19조를 제18조로 한다.

별표1을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행	개정안
제12조(개방화장실의 지정) ① 시장은 법 제9조에 따른 화장실 중 다수인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장소와 시설의 화장실에 대하여 개방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단서 신설>	제12조(개방화장실의 지정) ① ----- ----- ----- ----- ----- ----- <u>. 다만 영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영 제3조제2항 각 호에 정하는 규모 미만의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유동인구를 고려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u>
<제6장 과태료 부과>	<삭 제>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시장은 법 제21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정할 때에는 별표1의 부과기준에 따라야 한다.	<삭 제>
제19조 (생략)	제18조 (현행 제19조와 같음)

순천시 공원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2784호
----------	--------

- 제출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18. 7. 6.

1. 개정이유

-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 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의거 법령에 근거 없이 개인정보를 요구할 수 없기에 공원사용 신청서에 신청인 주민등록번호 작성란을 생년월일과 성별 기재로 변경 필요

2. 주요내용

- 별지 제1호 서식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과 “성별” 기재로 변경

3. 개정조례안 : 별첨

4. 관련법령 :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 개인정보 보호 원칙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 해당 없음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18. 2. 28. ~ 3. 20.) 결과 : 의견 제출자 없음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없음
- 예산부서 심의필 : 해당 없음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18. 2. 19.(전략기획과-1954)
- 법제부서 공고필 : 2018. 2. 28.(순천시 공원녹지사업소 공고 제2018-5호)

순천시 공원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공원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공원 사용허가 신청서

신청인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 :)		
도시 공원의 명칭				
공원 위치와 면적				
사용목적 및 사유				
사 용 기 간				

순천시 공원사용조례 제2조제4항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공원사용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순천시장 귀하

첨부서류 : 사업계획서 1부.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1호 서식																																																																				
공원 사용허가 신청서 <table><tr><td rowspan="2">신청인</td><td>성명</td><td></td><td><u>주민등록번호</u></td><td></td></tr><tr><td>주소</td><td colspan="3">(☎ :)</td></tr><tr><td colspan="2">도시 공원의 명칭</td><td colspan="3"></td></tr><tr><td colspan="2">공원 위치와 면적</td><td colspan="3"></td></tr><tr><td colspan="2">사용목적 및 사유</td><td colspan="3"></td></tr><tr><td colspan="2">사용기간</td><td colspan="3"></td></tr></table> 순천시 공원사용조례 제2조제4항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공원사용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순천시장 귀하 첨부서류 : 사업계획서 1부.		신청인	성명		<u>주민등록번호</u>		주소	(☎ :)			도시 공원의 명칭					공원 위치와 면적					사용목적 및 사유					사용기간					공원 사용허가 신청서 <table><tr><td rowspan="2">신청인</td><td>성명</td><td></td><td><u>성별</u></td><td></td></tr><tr><td></td><td></td><td><u>생년월일</u></td><td></td></tr><tr><td rowspan="2">신청인</td><td>주소</td><td colspan="3">(☎ :)</td></tr><tr><td>주소</td><td colspan="3">(☎ :)</td></tr><tr><td colspan="2">도시 공원의 명칭</td><td colspan="3"></td></tr><tr><td colspan="2">공원 위치와 면적</td><td colspan="3"></td></tr><tr><td colspan="2">사용목적 및 사유</td><td colspan="3"></td></tr><tr><td colspan="2">사용기간</td><td colspan="3"></td></tr></table> 순천시 공원사용조례 제2조제4항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공원사용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순천시장 귀하 첨부서류 : 사업계획서 1부.		신청인	성명		<u>성별</u>				<u>생년월일</u>		신청인	주소	(☎ :)			주소	(☎ :)			도시 공원의 명칭					공원 위치와 면적					사용목적 및 사유					사용기간				
신청인	성명			<u>주민등록번호</u>																																																																		
	주소	(☎ :)																																																																				
도시 공원의 명칭																																																																						
공원 위치와 면적																																																																						
사용목적 및 사유																																																																						
사용기간																																																																						
신청인	성명		<u>성별</u>																																																																			
			<u>생년월일</u>																																																																			
신청인	주소	(☎ :)																																																																				
	주소	(☎ :)																																																																				
도시 공원의 명칭																																																																						
공원 위치와 면적																																																																						
사용목적 및 사유																																																																						
사용기간																																																																						